

결 정

2018-1-7 독자불만처리

불만제기인 ○ ○ ○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8년 1월 8일자 인터넷 유머 「초보 결과 선수 결의 차이」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위 게시물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8일(월) 문화일보 22면과 문화일보 홈페이지 ‘인터넷 유머’ 부분
에 유머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이고 저급한 게시물이 있어서 이렇게
신고 드립니다. 문화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신문윤리강령에 반하고, 특히 공공매체
로서의 언론 윤리를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2. 이에 앞서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2018년 1월 8일 (월)

내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일찍이 내가 세상의 모든 일에 거의 모두 자신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쩨 도리가 없었으니, 대개 실상이 그러하였다. 서른 네댓 살 되어 기력이 빠지기 시작하였지

“반(半) 여든에 첫 계집질을 하니 흐롱하롱 우벅주벅 죽을 뻔, 살 뻔하다가, 와당탕 달려들어 아리저리하니 노도령(老道令)의 마음 흥글함글, 이 재미 일찍 알았던들, 길 적부터 할 것을.”

■ 인터넷 유머

초보 걸과 선수 걸의 차이

1. 모델에 막 들어가면
 - 초보걸: 대부분 침대에 걸터앉아 쓸데없는 얘기를 꺼냅니다.
 - 경험걸: 바로 TV 켜고 냉장고 문 열어 음료수를 확인합니다.
2. 성에 관한 각종 지식을
 - 초보걸: 보통 여성잡지에서 배웁니다.
 - 경험걸: 몸으로 직접 터득합니다. 배운 지식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여자들 사이에선 '오피니언 리더'가 됩니다. 각종 모임에서 돈 안 냅니다.
3. 뒤치기할 때
 - 초보걸: 대부분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 경험걸: 양팔 간격을 나란히 하고 고개를 확 갖혀 잘 버팁니다. 등이 아래쪽으로 활처럼 휩니다.
4. 체위를 바꾸고자 할 때
 - 초보걸: 일일이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 경험걸: 손으로 엉덩이만 치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체위 관련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나 봅니다. 한 번 치면 뒤치기, 두 번 치면 가위치기 등등...

5. 일이 끝난 뒤 좋았다는 표현을
 - 초보걸: “오빠, 사랑해”라고 합니다.
 - 경험걸: “오빠, 개운해”라고 합니다.

마누라의 시력

중년의 아줌마가 옷을 모두 벗은 맨몸으로 안방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다.

“내 몸매가 형편없어 보여요. 은통비계 살 군살이고 주름까지 자글자글... 뭐 칭찬할 만한 점은 없나요?”

남편이 한 번 쓱 결눈질로 보더니 말했다.

“당연히 있지.”

아줌마가 기쁜 마음에 뭐냐고 묻자 남편이 대답했다.

“시력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2018년 1월 8일자 지면과 온라인 판 ‘인터넷 유머’ 코너에 「초보 결과 선수 걸의 차이」 제하의 게시물을 실었다.

위 게시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던 것인데, 문제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신문에 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유머의 수준을 넘었다는 점이다.

“뒤치기를 할 때 초보 걸은 대부분 앞으로 고꾸라지고, 경험 걸은 양팔 간격을 나란히 하고 고개를 확 젓혀 잘 버틴다”, “체위를 바꾸고자 할 때 초보 걸은 일일이 말로 설명해야 하지만 경험 걸은 손으로 엉덩이만 치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한 번 치면 뒤치기, 두 번 치면 가위치기...” 등 성경험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여성을 분류하고 성적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다수의 여성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게시물의 이러한 표현들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보기에 부적합하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문화일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이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선정적이고 저속한 유머를 여과 없이 게재해 신문의 품위를 훼손한 점은 본 위원회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

위 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김희
하 윤 수 김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